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개인정보누

설 등)

[인천지방법원 2010. 5. 14. 2010고정792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정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1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